

# 01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변경 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학·경력자 인정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이 2006. 6. 22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력신고 및 경력등급변경 등 경력관리에 관한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 시행일(2007. 6. 25) 이전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진배경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 국무총리보고』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 주요내용

1. 시행일 이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급, 고급 등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계속 인정함**
2. 2007. 6.25 이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자 중
  -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 기능장 및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하며,
  - 기능사는 중급까지만 인정함
3. **학·경력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초급만 인정**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감리원은 6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감리원은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 유의사항

1. 기능장·기사·산업기사 및 학·경력자 중 특급, 고급 등 승급 대상자는 2007. 6. 22까지 신고하여 야만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급에 반영되며,
2. 2007. 6. 25부터는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함
3. 시행일 이전 경력신고만 하고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지 아니한 자는 2007. 6. 22까지 해당 수첩발급을 신청해야만 개정 전 규정에 의한 해당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
4.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2007. 6. 24 소인까지 유효**

### ■ 개정법령 및 시행일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 06. 22
2.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및 부칙 제4조
3. 시행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은 2006.06.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및 별

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 “2007년 6월 25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 (부칙 제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홈페이지(www.kee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신·구문비교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전력기술인의 범위 (제3조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5년 이상 ○기사 8년 이상 ○산업기사 11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학 15년 이상	-
고급 기술자	○기능장 2년 이상 ○기사 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학 12년 이상 ○고등학교 15년 이상	-
중급 기술자	○기능장 ○기사 2년 이상 ○산업기사 5년 이상 ○기능사 8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학 9년 이상 ○고등학교 12년 이상	○학사 10년 이상 ○전문대학 13년 이상 ○16년 이상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2년 이상	○석사 또는 학사 ○전문대학 2년 이상 ○고등학교 4년 이상 (신설)	○학사 이상 4년 이상 ○전문대학 6년 이상 ○8년 이상

[별표 2] 감리원의 자격 (제21조 제1항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기능장 5년 이상 ○기사 8년 이상 ○산업기사 11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학 15년 이상	-
고급 감리원	○기능장 2년 이상 ○기사 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학 12년 이상 ○고등학교 15년 이상	-
중급 감리원	○기능장 ○기사 2년 이상 ○산업기사 5년 이상 ○기능사 10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학 9년 이상 ○고등학교 12년 이상	○학사 10년 이상 ○전문대학 13년 이상 ○16년 이상
초급 감리원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6년 이상	(신설) ○학사 1년 이상 ○전문대학 3년 이상 ○고등학교 6년 이상 (신설)	○학사 이상 5년 이상 ○전문대학 7년 이상 ○10년 이상

개정			
[별표 1] 전력기술인의 범위 (제3조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삭 제>
특급 기술자	○기술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고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삭 제>	-
중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초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석사 이상 ○학사 1년 이상 ○전문대학 3년 이상 ○고등학교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삭 제>

[별표 2] 감리원의 자격 (제21조 제1항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삭 제>
특급 감리원	○기술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고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삭 제>	-
중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초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석사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삭 제>

# 02

## 「제4회 전력기술진흥대회」 포상추천 안내

●● 2007. 11. 1 「제4회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거행할 계획이며, 동 행사에 우리나라 전력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전력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산업 발전에 계속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 ■ 포상개요

1. 행사명 : 제4회 전력기술진흥대회
2. 주 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 후 원 : 산업자원부
4. 일 시 : 2007년 11월 1일(목) 10:00
5. 장 소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예정)

### ■ 포상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확보 및 국민경제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전력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신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산업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전기설계 및 감리분야, 전기안전관리분야, 전기공사분야, 전기사용합리화분야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기타 국가전력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 포상종류 및 공적기간

#### 1. 정부포상(정부포상지침)

구 분	공적기간	공적내용
훈·포장	15년 이상	•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 및 서울시장 표창	5년 이상	

#### 2. 협회포상

구 분	공적기간	공적내용
자랑스런 전기인상	20년 이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국가 또는 사회이익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
협회장 공로패	~	
협회장 표창	3년 이상	

■ 포상인원 : 추후 결정

○ 2006년도 포상내역 - 정부포상

구분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서울시장 표창	계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인원	1	2	1	2	20	6	3	6	41

○ 2006년도 포상내역 - 정부포상 2006년도 포상내역 - 협회포상

구분	자랑스러운 전기인 상	협회장 공로패	협회장 표창	계
인원	1	3	20	24

■ 포상후보자 추천권자

1. 정부포상(서울시장 표창 제외) : 협회 임원 · 지회장 · 업역관련협의회 의장,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장
  - 서울시장 표창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서울지역 지회장
2. 협회포상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1개 지회장

■ 접수마감 : 2007년 7월 13일(금)까지(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지원처 민원봉사실

■ 시상예정일시 :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 제출서류

1. 정부포상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이력서 부착 1매 포함)
-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공적증빙자료 2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가 입력된 디스켓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발급 최근 2년간 산재율표 (기업체 임원인 경우에 한함)

2. 협회포상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가 입력된 디스켓 1부

■ 참고사항

1. 공적기간은 2007년 0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포상심사 결과 추천후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음.
3. 제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의 **신고양식 다운로드**에서 다운(Down)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03

## 인터넷 업무거래 및 각종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안내

### ■ 목적 및 시행일자

- 회원 및 설계·감리업체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2007. 4. 2일부터

### ■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상

- 가. 회원 : 본인이 정상회원
- 나. 관련업체 : 당해 업등록 보유기술인력 전원이 협회 정상회원
- ※ 정상회원 : 회원관리규정에 의한 정상회원을 말함(권리정지자 및 제명자 제외)

### ■ 인터넷 서비스 이용범위

구분	서비스 이용범위	비고
회원	- 회비조회 및 납부 - 교육접수 및 교육수료증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필증	회원본인
관련업체	- 전력기술인(설계업)보유확인서 - 감리원 보유확인서 - 감리원배치확인서 - 공사감리완료필증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대행사업체·대행기관/산자부·시도제출용)	설계업체 감리업체 대행업체 안전공사 대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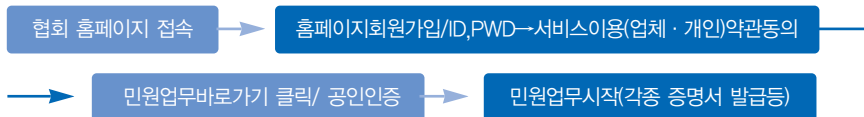
### ■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결제방법

- 가. 인터넷업무거래 : 교육접수시 교육비는 교육과정별 소정교육비 적용
- 나.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 증명서 종류별로 “회원할인수수료” 적용
- 다. 결제방법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및 절차

#### 가. 서비스 이용신청방법

- 회원 또는 관련업체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신청



※ 자세한 이용절차는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민원업무바로가기 참조

## 04

## 전력신기술 지정고시(제51, 52호) 안내

###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5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 지정번호 : 제51호

- 신기술명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기술)
-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주) / (주)미동이엔씨 / 지에스네오텍(주)
  - 대표자 : 정지택 / 김광문 / 최성진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94277 / 110111-0007313 / 110111-01669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번지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 ■ 지정번호 : 제52호

- 신기술명 : 앵글형 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량공법 (기술)
-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동부건설(주) / (주)통일전력 / (주)서원이엔지 / 라인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황무성 / 정연권 / 신용술 / 곽진훈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 / 160111-0103187 / 115611-0022712 / 230111-0074929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7-1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8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403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앵글형 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정기구를 이용한 측량공법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 ■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05

## 전기기술지원 및 진단·점검 신청 안내

●●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산업자원부의 특별법인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전력기술인들께서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도와드리기 위하여 전력기술지원센터에서는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전력시설물에 발생하는 각종 트러블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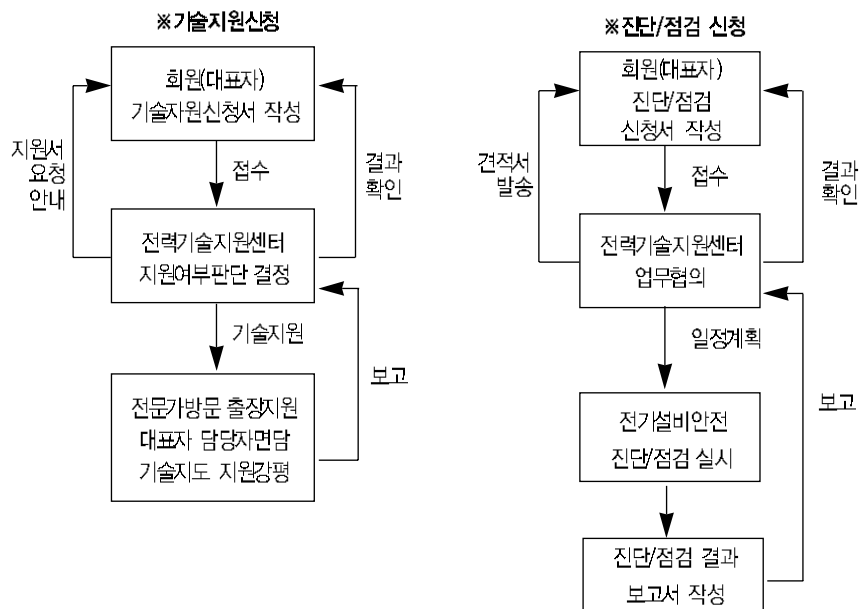
### ■ 전력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기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합니다.)

### ■ 진단 및 점검

- 전력계통진단,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점검, 열화상 진단, 고조파 장애진단, 정전기 방지 기술진단, 기타 부적합 전력설비 부분진단

### ■ 신청 절차



## 시험성적서 인정방법 변경내용 안내

●● 한국전기안전공사(법정검사팀)에서는 지난해 검사기준심의회를 거쳐 개정된 검사업무처리 방법(시험성적서 확인)에 대하여 2007. 7. 1일부 공사계획신고분 사용전검사부터 적용 시행함에 따라 변경된 시험성적서 인정방법을 알리고자 하오니 전기설비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배경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업무 수행시 고압이상 전기기기에 대해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 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제품과 수입품의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이 달라 그동안 꾸준히 국내 중전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국내품의 역차별 시정을 위해 검사기관에서 검사기준을 공평히 하고자 제도 개선을 실시함

### II. 시험성적서 확인제도

#### 1. 시행 배경

불량 전기설비 사용으로 인한 정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책의 일환으로 동력자원부 지침에 의한 제도로써 사용전검사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업무처리 지침 및 처리방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2. 대상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와 고압이상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로 변압기, 차단기, 보호계전기, 보호설비, 피뢰기, 변성기, 개폐기, 발전설비, 콘덴서 등이 대상품목임

#### 3.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구분	'98 이전	'98 이후
국내제품	공인시험성적서	공인시험성적서(검수시험성적서)
수입제품	제작사 자체시험성적서	공인시험성적서(참고시험성적서)

#### 4. 시험의 종류

- 형식시험(Type or Design Test)
  - 처음 개발된 제품이거나, 형질이 변경된 제품의 모델, 특성 등이 국내 혹은 해외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 검수시험(Routine Test) /사용전검사시 확인하는 시험성적서 내용
  - 양산되는 제품의 성능, 특성 등이 주문자의 사양 혹은 설계내용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행하는 시험
- 참고시험
  - 제품 또는 중요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규격 또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시험으로 무 판정 시험임

### Ⅲ.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변경

#### 1. 주요 변경사항

- 국내 공인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3자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함
- 사용전검사시 확인하는 시험성적서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
- 참고시험 대상을 최소화 함
-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시험성적서 대상을 전압 5만V 이상에서 고압이상으로 변경

#### 2. 시험성적서 인정방법

- 형식시험을 실시한 검수시험성적서 확인

구분	현행	개정
국내제품	공인시험기관성적서(검수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성적서(검수시험성적서)
수입제품	공인시험기관성적서(참고시험성적서)	※ 형식시험 확인 필 의견이 명기된 성적서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표시품의 자체 시험성적서
- 충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2호 ( 97.6.24)]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면제된 제품의 자체시험성적서
- 참고시험 인정범위
  - 개발품,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하여,
    - 관련규격이 없는 경우
    - 관련항목에 대해 국내 시험설비가 미비한 경우
  -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하여
    - 형식시험 또는 검수시험을 필한 제품
    - 국내생산이 안되는 수리제품

#### 3. 시행시기 : 2007. 7. 1일 공사계획신고분 사용전검사부터